# 제922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 no. | 법령명 | 규제내용 | 결과 |
|---|---|---|---|
| 1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br>(해양수산부) | 1.어구의 사용량을 초과하여 실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신설)<br>○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선 규모 대비 어구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싣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어구 사용량을 위반한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적용되고 어구를 초과하여 실은 경우는 제제가 어려워 모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분기준을 신설<br>– 기준량을 초과하여 어구를 실은 경우 20일, 50일, 80일(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의 허가어업 및 해기사면허 정지를 부과<br>▶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 1.비중요 |

| no. | 법령명 | 규제내용 | 결과 |
|---|---|---|---|
| 2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br>(금융위원회) | 1.온라인 전용 펀드 설정 규정(신설)<br>○ 현재 금융위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온라인 펀드 활성화 행정지도를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여 투자자 투자비용 절감 및 선택권 제고<br>– 자산운용사가 신규 공모 증권펀드를 종류형펀드로 설정하는 경우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온라인 판매용 펀드를 병행설정하도록 함<br>–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DC, IRP)를 통해 투자하는 종류형펀드의 경우에도 온라인 판매용 펀드를 병행설정<br>– 일부 펀드(① 환매금지형 펀드, ② 상장지수펀드, ③ 기타 취득자격 제한 등이 있는 펀드)는 종류형펀드로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용 펀드 병행설정 대상에서 제외<br>▶금융투자업규정 제7조의24 | 1.비중요 |

| no. | 법령명 | 규제내용 | 결과 |
|---|---|---|---|
| 3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br>(국토교통부) | 1.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신설)<br>ㅇ 튜닝부품인증기관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br>–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인증을 한 경우 지정취소 등<br><br>▶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 1.비중요 |
| 4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br>(국토교통부) | 1.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신설)<br>ㅇ 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할 때 튜닝부품의 인증기준 신설<br>– (장치 일부 변경)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의 기능을 유지하며 성능이 우수하거나 형상이 변경되고, 재료의 물리 · 화학적 특성이 기존부품과 동일하거나 우수할 것<br>– (부착물 추가) 자동차 성능 향상, 외형변경 등의 효과가 있고, 튜닝부품에 적합한 물리 · 화학적 특성을 갖출 것<br><br>▶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 1.비중요<br>2.비중요 |

| no. | 법령명 | 규제내용 | 결과 |
|---|---|---|---|
| | | 2.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신설)<br>ㅇ 자동차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튜닝부품 인증기관 지정기준 마련<br>–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튜닝 및 튜닝부품과 관련되거나 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시험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필요한 시설과 인력(별표 5의 9)을 구비 해야함<br>▶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 |
| 5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br>(환경부) | 1.시정명령에 대한 절차·방법 및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신설)<br>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사업시행자가 의무이행기간 내 처리시설 설치 또는 부지분양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br>ㅇ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자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행완료시까지 매년 1회)<br>▶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3 | 1.비중요 |

| no. | 법령명 | 규제내용 | 결과 |
|---|---|---|---|
| 6 |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개정안<br>(여성가족부) | 1.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표준교육과정 개편(강화)<br>○ 이론위주의 기존 교육과정을 실기·실습을 강화 및 아동의 안전, 건강관리와 학대예방 교육 보강(100→120시간)<br>* 아이돌보미의 교육 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육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실시<br><br>▶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제3조의1 | 1.비중요 |
| 7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br>(소방청) | 1.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D급)(강화)<br>○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강화<br>- 금속화재(D급)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요건 신설<br>- 금속화재용 분체소화기의 조작방법 구분 신설<br>- 금속화재용 분체소화약제의 요구조건 신설<br>- 금속화재용 소화기의 표시방법 구분 신설<br>- 금속화재용 소화기의 주의사항표시 신설<br>- 금속화재 소화성능 시험방법<br><br>▶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제8조,제38조 | 1.비중요 |